

농어민 세금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 편집부 -

본회는 지난 4월23일 서울시 농협9층 회의실에서 전국중계업 및 부화업경영자 세무 교육을 가진 바 있으며 이날 교육내용중 국세청이 제시한 문답식 축산업분야 세법을 지난 본지 5월호에 게재한 데 이어서 최근 농어민의 세금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게재한다.

◇ 할아버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영농하는 1인 자녀에게 생전에 농지 등을 물려준 경우의 세금(증여세)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가 자식중 농사를 짓고 있는 한사람에만 논·밭·과수원·산림지를 물려주는 데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첫째, 농지 등을 한 자녀에게만 몰아서 물려주어 농사를 짓는 농민이 영농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할아버지, 아버지 등의 농업경영권을 생전에 자식에게 물려주어 농민후계자 육성에 기틀을 마련하고

셋째, 새로운 영농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게 되며

네째, 농지 등을 반드시 농사짓고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조세혜택을 줌으로써 '경자유전'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앞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자녀 1인에게 농지 등을 물려주는 경우, 세금(증여세)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으로부터 농지 등을 영농 1자녀가 물려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농지 등을 물려준 사람의 자녀 중 한사람으로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이어야 하며, 그 농지 등을 받는 자

녀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불문한다.

둘째, 농지 등을 물려받을 사람은 그 농지 등이 있는 곳과 같은 시(서울시, 직할시도 된다), 읍, 면에 살고 있거나 옆에 있는 시, 읍, 면에 살고 있어야 한다.

셋째, 농지 등을 받을 당시 만18세이상이어야 한다.

네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

세금(증여세)을 내지 않는 농지 등의 종류와 면적은?

세금을 면제받게 되는 농지 등의 종류는 농지·초지·산림지이며 이들 농지 등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수가 있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면제되는 면적은 농지가 6천평, 초지가3만평, 산림지가 6 만평이다.

◇자경 농민에게 양도, 증여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논·밭·과수원·초지·산림지를 농사를 짓고 있는 직계존속(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등),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파는 경우에 세금(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을 면제하여 주어 농사를 짓지 않고 논·밭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다쉽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농지 등을 직계존속(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형제자매에게 팔거나, 물려주는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금(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팔거나 물려주게 될 농지·산림지·초지는 1986.12.31.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이후에 취득

◇ 할아버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영농하는 1인 자녀에게 생전에 농지 등을 물려준 경우의 세금 (증여세 면제)

◇ 농민의 각종 취득세 · 자동차세 감면혜택 시설 및 확대

한 것은 세금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1991.12.31까지 파러나 물려줘야 한다.

세째, 농사를 짓고 있는 직계존속(할아버지, 아버지등),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팔거나 물려주어야 한다.

네째, 농지 등을 사거나 물려받은 자는 그 농지 등이 있는 곳과 같은 시(서울시, 직할시도 된다), 읍, 면에서 살거나 옆에 있는 시, 읍, 면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사거나 물려받은 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지가 2년이상되어야 하고 만 18세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농지 등을 팔거나 물려주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는가?

농지 등을 팔거나 물려주는 사람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며 농민이 아니라도 된다.

또한 농지 등이 있는 곳에 살든, 인접한 지역에 살든, 멀리 떨어져 살든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농지 등을 팔거나 물려주는 사람은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농민의 각종 취득세 · 자동차세 감면혜택 신설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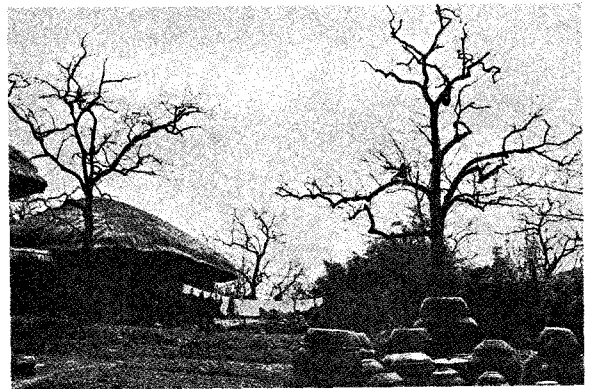
농민이 농지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 50%감면, 농지를 정부로부터 불하받는 경우와 양송이 재배업, 양잠업을 하고자 토지·건물을 살 때 취득세 면제, 자동농기계류 등 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자동차세면제로 농민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농민이어야 한다.

첫째, 농사를 짓는 농민이어야 한다.

둘째, 2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사를



지를 목적으로 사는 농지 등(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이어야 한다. 농지 등으로 만들려고 취득하는 임야는 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로 만들어야 한다.

세째, 산, 농지 등이 있는 곳이 면단위 지역이어야 하며 읍단위 이상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내라도 개발제한지역은 가능하다.

네째, 농지 등을 산 사람이 사는 곳이 그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에 살거나 옆에 있는 시·구·읍·면 지역안에 있어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받는 농지 등의 종류와 그 면적은 얼마나 되나?

첫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 등은 논·밭·과수원·목장 용지와 관계법률에 의해 논·밭·과수원·목장용지를 만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이다.

둘째, 감면받을 수 있는 면적은 농지 등을 산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면적을 각각 합하여

○논·밭·과수원: 20,000㎡(6천평)

○목장용지: 100,000㎡(3만평)

○임야: 200,000㎡(6만평)이다.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농지나 임야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이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할 때에는 그

◇8년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팔 경우 양도 소득세 면제

◇목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세금혜택은?

◇자경 농민에게 양도, 증여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 증여세 면제

초과부분만을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제하하게 된다.
경운기를 사는 경우에 취득세,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가?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경운기, 트랙터 등 자동노이계류를 산 경우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자도아세도 계속 내지 않는다.

◇8년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팔 경우 양도 소득세 면제

8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지를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때문에 농지를 보다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반드시 8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이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지?

그 농지를 산 때부터 판 날까지 8년이상 자기가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는 안된다).

다만, 그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환지)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상속의 경우에 기간계산은 농지를 물려준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은 기간과 물려받은 사람이 농사를 지은 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 되면 된다.

◇목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세금혜택은?

양축가가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제범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제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파는 목장을 계속 5년이상 경영했어야 하나?

반드시 5년이상 계속 경영하여 온 목장을 종전보다 더 큰 면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목장에 실제 사용되

사 용 별	사육·성축 두	면 제 범 위
한 우·육 용 우	20마리	마리당1,150(348평)
유 우	20 "	2,300(695평)
양 · 사 습	200 "	230(69평)
돼 지	100 "	13(4 평)
토끼(친질라 및 밍크포함)	500 "	3(1 평)
가금(종계장에서 설치된부화장 설치)	1,000 수	3(1 평)

는 토지와 건물을 팔므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감면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연도 5월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자산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 사본
- 구목장 목축명세서와 당해 자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소득구분 계산서

목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은?

- 첫째, 종전 목장의 토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둘째, 구목장을 판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 목장의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 목장 양도전에 신 목장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모장을 팔아야 함.

셋째, 목장을 판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 목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었거나 면제되었어야 함. 5%